

의안번호	제 146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4월 30일 (제339회)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4월 13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146 호

제출연월일 : 2015년 4월 1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예지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를 의약바이오 분야의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청주시와 공동부담하여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현재 도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50%를 청주시에 매각하기 위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
- 건립규모
 - 부지면적 : 25,623㎡ ※청주시 시유지 무상사용
 - 건축연면적 : 10,400㎡(지상 2층, 4개동)
- 사 업 비 : 260억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체험관 3동, 전시관 1동

□ 재산의 처분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

- 대상부지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번지
- 매각규모 : 6,467.5m²
- 매각시기 : 2015년 하반기
- 매각방안 : 도 소유 부지의 50%를 청주시에 매각(1/2씩 공유지분 소유)
※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0년간 부지사용권만 제공(갱신가능)

구 분	단 위	계	충북도	청주시
지 분 율	%	100	50	50
지분면적	m ²	12,935	6,467.5	6,467.5
매각금액	천원	2,022,776	1,011,388	1,011,388

⇒ 부지가격은 조성원가(156,380원/m²)로 산정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15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금 액
취 득	계	토지	1	63,391.5	9,913,163				1	63,391.5	9,913,163
		건물	1	2,000	4,000,000	1	10,400	26,000,000	2	12,400	30,000,000
		기타									
	매 입	토지	1	63,391.5	9,913,163				1	63,391.5	9,913,163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1	2,000	4,000,000	1	10,400	26,000,000	2	12,400	30,000,000
		기타									
처 분	계	토지				1	6,467.5	1,011,388	1	6,467.5	1,011,388
		건물									
		기타									
	매 각	토지				1	6,467.5	1,011,388	1	6,467.5	1,011,388
		건물									
		기타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건	10,400	26,0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번지 일원	10,400	26,000,000	2018.8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	신축
	기타							
2	토지		이	하	여	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15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6,467.5	1,011,388	2015.하반기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번지	6,467.5	1,011,388	2015.하반기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공동부담	청주시	일부 매각
	건물							
	기타							
2	토지		이	하	여	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 style="margin-left: 20px;">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p> <p style="margin-left: 20px;">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 style="margin-left: 20px;">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